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545
- 발 의 자 : 김형재 의원 외 17명
- 발 의 일 : 2024년 2월 2일
-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명백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지원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한국자유총연맹을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라. 시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나. 입법예고(2024.2.14. ~ 2.18.) 결과: 의견없음.
-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이하 '본 제정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1조¹⁾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직인 한국자유총연맹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등, 표창,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발전 및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정의함.
제3조(지원)	-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 시장은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제5조(표창)	-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
- 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는 1989년 4월 1일에 설립되어, 산하 25개구 지회, 425개동 위원회가 있으며 현재 221,255명의 회원이 활동중에 있음.

[법정단체 현황('24.2.1.기준)]

구 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지원근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 市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설립일자 (서울시조직)	1981. 10. 1.	1989.4.1	1989.4.1	1980. 10. 27
조직구성	25개자치구 지회, 426개동회	25개자치구 협의회, 376개동 위원회	25개자치구 지회, 425개동 위원회	25개자치구 협의회
대 표 자 (임기)	김연포('56.2.11.) ('24.2.1.~'27.1.31)	공석 대행 : 박태순('46.4.17.) ('23.6.9~'24.정기총회 시까지)	김성덕('57.6.18.) ('22.11.11.~'25.11.10.)	윤동한('47.12.30.) ('23.9.1.~'25.8.31.)
회 원 수	45,842명 (전국 210만여명)	58,000명 (전국 80만여명)	221,255명 (전국 320만여명)	3,645명 (국내외 21,984명)
직 원 수	6명	2명	3명	1명
소 재 지	동대문 천호대로 389, 6층	양천 신목로 10	동작 여의대방로20길 23-1, 자유회관1층	중구 장충단로 84, 201호
'24년 추진사업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서울 - 약자와의 건강한 동행 - 쪽방촌 이야기 - 탄소중립 실천 사업 - 새마을지도자대회 - 새마을여인대회 - 국민독서경진대회	밝고 바른 사회건설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 안전문화 정착교육 - 여성대학 - 사랑의 꾸러미사업 - 민주시민개혁 대회 - 의식개혁 글짓기대회 - 통일안보체험 행사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실천운동 - 안보지킴이 워크숍 - 안보지킴이 다짐대회 - 안전의식제고 활동 - 통일관 정립 강연회 - 호국영령 추모 위령제 - 통일안보체험 행사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 - DMZ 사계를 만나다 - 탈북청년과 함께하는 북한인권세미나

- 동 제정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안보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광역시·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 현황: 8개 시도 >			
연번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자
1	경기도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2019. 7. 16.
2	경상남도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	2014. 2. 13
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2023. 8. 11.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 1.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2013. 5. 10.
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7. 12.
7	전라남도	전라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2012. 12. 27.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 4. 4.

- 다만, 조례의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²⁾ 등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추후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한 단체 등에 대해서도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야 하는지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행정국은 법정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나, 표창 관련 조항 등은 기존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준하여 법정단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단 체 명	'21년(교부액)	'22년(교부액)	'23년(교부액)	'24년(예산액)
계	321,501	1,987,279	631,053	437,753
새마을회	101,738	1,488,889	170,231	121,661
바르게살기운동	67,236	360,486	141,431	126,561
한국자유총연맹	84,027	73,384	124,321	124,336
민주평통	68,500	64,520	195,070	65,195

나. 세부내용 검토

1) 목 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안보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밝힘으로써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만, 상위법령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³⁾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용어의 뜻을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정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다만, 안 제1조(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와 안 제2조(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는 같은 단체를 다른 용어로 지칭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한국자유총연맹(정부기구)의 정관은 서울특별시 지부는 각 자치구 지회를, 읍면동에는 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 따라 총재가 하부조직을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바,
 - 자치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지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는 없는지, 자치구와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원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한국자유총연맹 정관」 제25조(하부조직의 설치)〉

- ① 총연맹은 하부조직으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읍면동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에는 각 조직을 대표하는 지부회장과 지회회장 1인을 둔다.

-
- 3)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해외동포가 거주하는 외국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 ④ 이북5도민의 총연맹 활동참여를 위하여 이북5도지부를 둔다.
- ⑤ 하부조직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따로 정한다.
- ⑥ 총연맹은 통일 준비 민주시민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3) 지원(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전한 안보관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책 수립, 시행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확충사업
5.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다만, 법령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범위를 운영경비, 시설비, 그밖의 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경비”의 포괄성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종류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안 제3조제1호의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안 제3조 제4호의 “통일기반 확충사업”은 매우 포괄적이며, 사업의 성격이 모호하여 구체적 사업을 유추하기 어려운 바,
- 지원범위를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간략화하고,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서 시장이 재량에 따라 판단 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4) 공유재산의 대부 등(안 제4조)

- 안 제4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⁴⁾에 따라 공유 재산 및 시설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 및 법령 개정 시 조례의 적기 개정 관점에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5) 표창(안 제5조)

- 안 제5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표창)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 4)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정관에서 규정한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정관 제4조) 범위에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를 포창하는 것이 자유총연맹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한국자유총연맹 정관」 제4조(사업)〉

본 총연맹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헌법이념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련단체와의 협력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시장경제 가치창달
6. 통일기반 확충사업
7. 국제 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
8.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조달 사업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6)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 안 제6조는 보조금 관련 사항은 본 제정안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위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이 태 기
------	-------	-------	-------